



한국건설자원협회

수신자 각 지회장 및 대표이사
(경유)

참 조 사무국장

제 목 「폐기물관리법」 시행령 일부개정(안)에 대한 의견수렴 알림



1.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의 경중에 관계없이 과중한 처분*이 부과되는 문제점을 개선코자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('26.8.21~9.30)하였습니다.

* 「폐기물관리법」제66조에 따른 2년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2.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아래의 주요 내용과 의견제출 양식을 참고하여 **오는 9월 18일(금)까지** 협회로 제출(팩스: 02-3476-8464, 이메일: koras01@naver.com)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개정(안) 주요 내용

□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입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(안 별표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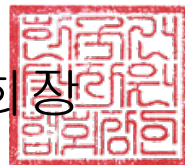
-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(1차 위반 시 50만원) 부과

나. 의견제출 양식

업체명 (담당자)	개정안 (찬성/반대/수정)	사유 (반대사유 또는 수정건의사항)

붙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(협회 홈페이지 참고). 끝.

한국건설자원협회 회장



08/26

대리 **정윤희** 팀장 **권병문** 부장 **나철성** 본부장 **강한서** 사무총장 **조정환** 회장 **김동구**

협조자

시행 정책기획부-469 (2026.08.26) 접수

우 05636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12길 18 (방이동,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) / <http://www.koras.org>

전화 02-2046-5923 전송 02-3476-8464 / yoony0815@koras.org / 공개